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년 10월 2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6년 10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3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06년 10월 13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사회복지과장 이춘구)

□ 제안이유

- 「국가보훈기본법」의 제정(법률 제7572호, 2005. 5. 31. 공포, 2005. 12. 1. 시행)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나라사랑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북돋우기 위함.

□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안 제3조)
 -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를 예우와 지원대상으로 정함.
-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안 제5조)

- 주요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 공적기재
 - 모범보훈가족 포상, 위안행사 개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등
 -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지원
 -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보훈시설물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보훈단체의 예산지원(안 제6조)
-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격전지 순례비용 등 지원
 - 지역봉사 사업 및 회원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 복지 지원 등(안 제7조)
-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면제
 - 생존 애국지사의 위문 및 사망 시 조문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동 조례의 적용대상이 아닌 해병대전우회, 베트남참전유공자전우회 등 기타 단체에서 민원은 없었는지?	○ 지금까지는 없었음.
○ 입법예고를 통해 예산이 1억 5천만원 정도 수반된다고 하였는데 동 조례가 공포되면 어느정도 예산이 수반되는가?	○ 그간 근거 조례없이 예산을 지원해 왔기 때문에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기존에 지원해 오던 예산보다 더 추가되는 예산은 없다고 봄.
○ 타 시·군 사례와 비교할 때 동 조례 제정을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닌가?	○ 그렇지 않음. 조금 늦은감이 있으며, 타 시·군도 조례제정을 추진중임.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없음

나. 반대토론

없음

5. 심사결과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36호
의결 년월일	2006. 10. 19 (제131회)

제출년월일 : 2006. 9. 29

제 출 자 : 부천시장

□ 제안이유

- 「국가보훈기본법」의 제정(법률 제7572호, 2005. 5. 31. 공포, 2005. 12. 1. 시행)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나라사랑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북돋우기 위함.

□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안 제3조)

-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를 예우와 지원대상으로 정함

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안 제5조)

- 주요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 공적 기재
- 모범보훈가족 포상, 위안행사 개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등
-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지원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보훈시설물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다. 보훈단체의 예산지원(안 제6조)

-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격전지 순례비용 등 지원
- 지역봉사 사업 및 회원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라. 복지 지원 등(안 제7조)

-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면제
- 생존 애국지사의 위문 및 사망 시 조문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국가보훈

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보훈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주요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 의례 실시
2. 주요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에는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에는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소개
5.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초청 위안행사 개최
6. 보훈관련 기념일 및 계기 행사시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7.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지원
8.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보훈시설물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6조(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용 등 지원
3. 지역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제7조(복지지원 등) 시장은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면제
2. 생존 애국지사의 위문 및 사망 시 조문 실시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시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사회복지과
입	담당과장	이춘구
안	담당팀장	이순이
자	담 당 자	이순이(☎320-2353)